

#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경훈 의원 외 29명
- 의안번호 : 제464호
- 발의일자 : 2023년 2월 3일
-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## 2. 제 안 이 유

- 도시숲의 거시적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(안 제14조)
- 나. 자구수정(안 제6조 및 제29조)

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피 재 황)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의 거시적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구성범위를 확대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는 동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<sup>1)</sup>의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,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,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사업 등 산림 및 수목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음.
- 위원회는 동 조례 제14조(위원회의 구성)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3항에 위원은 ①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관련 전문가, ②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, ③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.

#### 〈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현황〉

| 계  | 내부위원<br>(당연직) | 외부위원(위촉직)  |         |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| ① 도시숲등 전문가 | ② 주민 대표 | ③ 시민단체 추천 |
| 11 | 2             | 5          | 2       | 2         |

※ 내부위원: 푸른도시여가국장, 자연생태과장

※ 위원임기: 외부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

1) 도시숲·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, 가로수

- 그러나 위촉 위원 대상이 도시숲등 전문가, 주민대표,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심의안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.
- 상위법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<sup>2)</sup>에는 위촉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따라서 안 제14조와 같이 상위법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 위촉 대상 외에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’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의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---

2)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① ~ ② (생략)

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2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④ (생략)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